##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632

발의연월일: 2024. 10. 10.

발 의 자:이인선・김 건・주진우

김소희 · 강승규 · 박충권

강대식 · 박성민 · 주호영

정동만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과학·기술교육, 기후변화환경교육 등 다양한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경제 및 정치 분야는 국민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으로 경제 및 정치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 습득과올바른 경제관념 및 건전한 정치의식의 함양은 국민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성숙한 민주주의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큼에도 경제교육 및 정치교육에 관한 규정은 없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교육과 정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올바른 경제관념과 건전한 정치의 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의5 및 제22조의6 신 설).

법률 제 호

##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5 및 제22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5(경제교육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경제 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 야 한다.

제22조의6(정치교육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전한 정치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22조의5(경제교육) 국가와 지방
	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올바
	른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
	경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
	립・실시하여야 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제22조의6(정치교육) 국가와 지방
	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전
	한 정치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
	록 정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
	<u>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</u>